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증감된 통수에 따라 통·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통·리장의 정수 조정(별표)
- 605명 통·리장 ⇒ 610명 통·리장으로 조정(통장수 5명 증)
 - 선주원남동(증 2개통) : 금오산어울림 신축 (47통)
 봉곡코아루 (48통)
 - 형곡2동 (증 1개통) : 과대통 분리 (2통, 12통 일부 → 23통)
 - 광평동 (증 1개통) : 광평푸르지오 2차(7통)
 - 양포동 (증 1개통) : 과밀통 분리 (32통 일부 → 47통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05명에서 선주원남동 2명, 형곡2동 1명, 광평동 1명, 양포동 1명 등 총 5명이 증가된 610명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에 맞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